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8.

발 의 자 : 조승래 · 이정문 · 김준혁
임미애 · 김영진 · 이주희
김용만 · 장철민 · 서미화
김성희 · 강준현 · 박용갑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제작·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6의 제목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“문화콘텐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각각 “문화콘텐츠”로, “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”를 “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“문화콘텐츠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·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각각 “문화콘텐츠”로 한다.

라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

마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음악파일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

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각각 “문화콘텐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“문화콘텐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의6(<u>영상콘텐츠</u>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영상콘텐츠</u>(이하 이 조에서 “<u>영상콘텐츠</u>”라 한다)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<u>영상콘텐츠 제작비용</u>”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<u>영상콘텐츠</u>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</p>	<p>제25조의6(<u>문화콘텐츠</u>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문화</u> <u>콘텐츠</u>-----<u>문화</u> <u>콘텐츠</u>----- ----- -----<u>문화콘텐츠</u>----- ----- -----<u>문화</u> <u>콘텐츠</u>----- 「<u>소비자기</u> <u>본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소</u> <u>비자에게</u>----- ----- -----.</p>

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)에 상당하는 금액

② (생략)
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,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7(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콘텐츠”라 한다)를 제작하는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(이하 이 조에서 “문화산업전문회사”라 한다)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·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문화콘텐츠-----

제25조의7(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

-----문화콘텐츠-----
콘텐츠-----문화콘텐츠-----

콘텐츠-----

-----문화콘텐츠-----

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1. (생략)

2.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

② · ③ (생략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문화콘텐츠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